

## 서 약 서(제95조제1항 관련)

- 소 속:
- 직 급:
- 성 명:

상기 본인은 ○○○○(예: 자녀양육, 질병치료 등)을 위해 ○○  
(예: 육아, 질병 등)휴직을 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이 유지됨을 감안하여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상의 각종 의무를 준수한다.
- 휴직기간은 휴직의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않는다.
  - ※ 관련규정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, 「공무원임용령」 제57조의5, 「공무원임용규칙」 제10장제8절
  - ※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, 그 정도가 과하여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
- 휴직의 목적이 소멸된 경우 즉시 복직신청을 한다.
- 질병·유학·연수·육아·가족돌봄·해외동반·자기개발휴직 중인 경우 매 반기 말일의 15일 전까지 「공무원 임용규칙」 제91조의10(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) 및 별지 제25호서식(「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」 별지 제10호서식)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 보고를 한다.
  - 복직하는 경우와 반기별 보고시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는 복직 시에 보고

20 . . .

서약자: (서명)

고용노동부장관 귀하